

대전시민사회연구소 세미나(2008.11.6)

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발전전략

송 두 범

(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)

목 차

- I 수도권규제 정책 검토
- II 새정부의 국토정책 기초
- III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쟁점
- IV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발전전략

I

수도권규제정책의 검토

1. 수도권규제정책의 내용

| 구분 | 규제항목 | 규제내용 |
|-----------|------|--|
| 수도권 규제 | 규제대상 |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- 대학,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청사, 공장, 연수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 등 |
| | |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- 택지개발사업, 공업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, 도시개발사업 |
| | 규제수단 | 물리적 규제 - 금지행위,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거쳐 허용되는 행위, 총량규제 |
| | | 경제적 규제 - 과밀부담금,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등 종과제및 인력양성, 교육 |
| | 규제권역 | 과밀억제권역 - 인구 및 산업 과도하게 집중 및 집중우려 이전 또는 정비필요 (규제강도가 높음) |
| | | 성장관리지역 -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,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(규제강도 상대적으로 낮음) |
| | | 자연보전권역 - 한강수계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지역 (규제강도 아주 높음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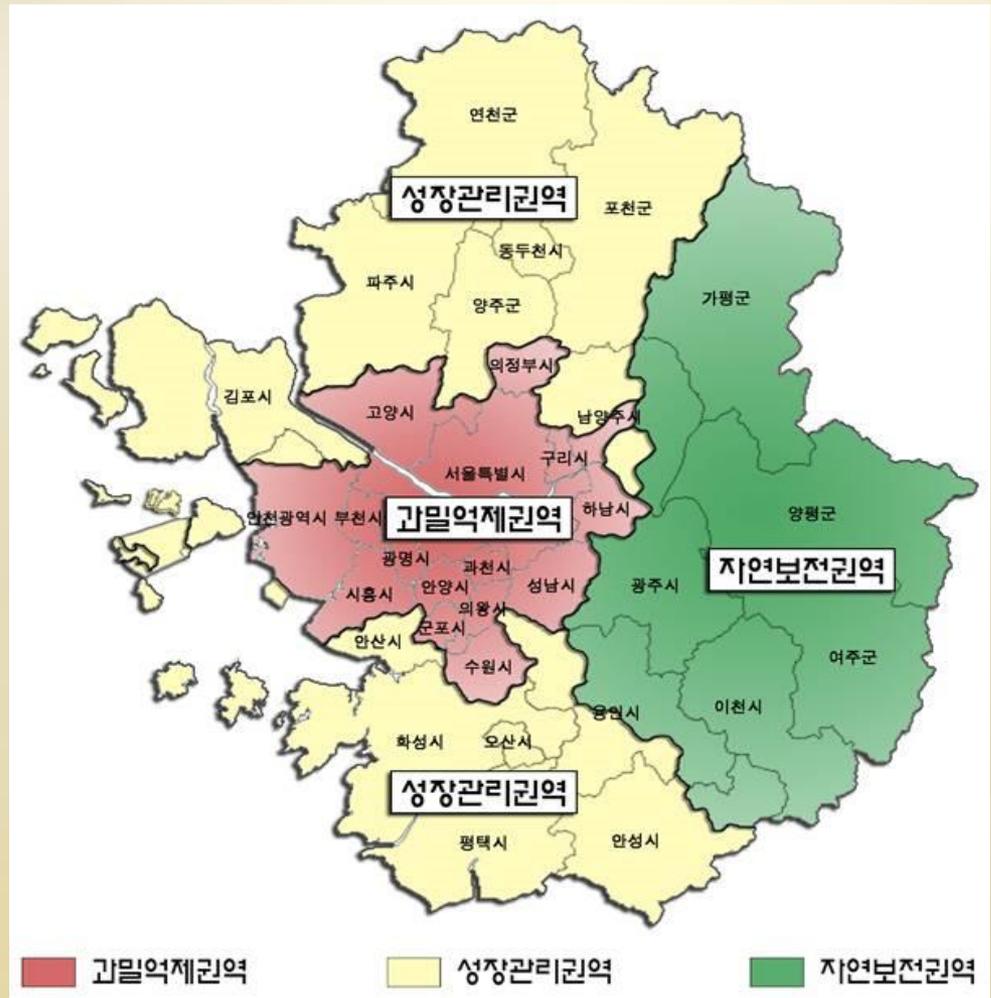
1. 수도권 규제정책의 내용

● 수도권정비법 규제특례

-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
평택시등의지원등에 관한특별법
-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
지원특별법
-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
관한법률

● 규제특례의 내용

- 공장설립규제
 - 공장총량별도배정
 - 공장신증설가능 등
- 대학규제특례
 - 대학이전, 증설, 증원
 - 외국교육기관설치



2. 수도권 공장입지 등 규제완화 동향

참여정부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동향

- 성장관리지역내 첨단 14개 업종 증설 허용범위 확대(2004)
- 도시형 공장범위 확대(2004)
- 택지개발지구내 제조업공장입주 허용범위 확대(2004)
-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(2004)
- 8개업종(LCD 등) 국내대기업 신증설 허용(2005)
-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2007년까지 허용(2005)
- 61개업종 대기업 신증설 허용(2005)
-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(2006)
- 자연보전권역내 공장부지면적 기준완화(2006)
-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4개업종 증설허용범위 확대(2006)
-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2010년까지 허용(2007)
-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중(2007-현재)
-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검토(2008.1.6)

2. 수도권 공장입지 등 규제완화 동향

(2008. 10. 30 발표)

| 구분 | 현행 | 개편후 | 개편시기 |
|-----------|--|--|--------|
| 수도권 규제 |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내 공장 △신설한도 1,000-1만㎡ △증설한도 3,000-1만㎡ △산업단지 밖으로의 이전금지 등의 제한 | - 건폐율, 용적률 한도내에서 공장신설 및 증설허용 - 산업단지 밖으로 공장이전 허용 | 2009.3 |
| | 산업단지 외 공장의 경우 신설, 증설, 이전제한 | - 산업단지 외부공장에 대해 제한적 증설 허용 - 과밀억제권, 자연보전권에서 성장관리 권역내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전면허용 | 2009.3 |
| | 연면적 200㎡ 이상 공장에 공장총량제 적용 | 연면적 500㎡ 이상 공장에만 공장총량제 적용 | 2009.3 |
| |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 관광지 조성 사업 6만㎡ 이내로 제한 | 관광지 조성사업 상한 폐지 | 2009.3 |
| |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지역 지 정하고 공장설립제한 |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| 2009.3 |
| | 서울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제한 | 1만㎡ 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허용 | 2009.6 |

3. 수도권 규제정책의 평가

● 수도권규제의 실효성 저하

-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지속적 집중
 - 인구 : 1960(20%) ➡ 2006(48.5%)
 - 산업 : 제조업사업체수(2004)=56.6%, 예금(2005)=67.8% 등
- 택지개발사업, 신도시 건설,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확대추진
 - 연간 공공부문 900만평 이상공급계획, 10개 신도시건설
 - 평택국제평화신도시건설 528만평 등

● 수도권정책의 신뢰도 및 일관성 상실

- 현안중심 갈등회피적 임기웅변적 규제완화 조치 연속적 추진
 - 수도권규제완화 요구강도에 따라 수도권정책 변경가능 희망신호 부여
-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의 지속적 완화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 부풀림
 - 평택지원특별법,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
 - 도시재정비사업지구내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, 수도권전문대학과 지방일반대학간 통합허용

3. 수도권 규제정책의 평가

● 10. 31 조치는 비수도권 산업기반 고사초래

-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내 공장규모, 업종 관계없는 공장 신증설, 이전허용은 수도권 규제의 마지노선이 붕괴를 의미
-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하청 중소기업 이전까지 원천 봉쇄
- 수도권은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모든 업종의 공장유치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
-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대다수의 공장 또한 지방이전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
-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 공장의 이전이유는 성장관리권역에서 업종 및 규모제한이 대부분임
-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허용 및 서울시에 첨단산업단지 허용은 과밀억제권역 지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
- 공장총량제 대상이 공장연면적 200㎡에서 500㎡ 규모로 완화하는 것은 소규모공장의 수도권집중으로 유도하여 난개발초래 및 비수도권 경제적 막대한 손실예상
- 자연보전권역에 관광지나 공장허용,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개편하여 개발하는 것은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위배
- 수도권 기업 취득등록세 완화조치로 지방이전기업을의 수도권 U턴현상 가속화

Ⅱ

새정부의 국토정책 기초

1.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

- 기존행정구역 고착 → 광역경제권 구축
 - ▣ 규모의 경제, 네트워크 경제로 지역경쟁력 강화
- 지역적 안배 → 지역특화발전
 - ▣ 지역의 다양성 및 차별성 인정, 지역의 잠재력 발굴 활용
- 중앙집권적 시혜 → 분권과 자율
 - ▣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의 극복과 분권적 지방발전
- 소모적, 갈등적 지역주의 → 지역간 협력 상생
 - ▣ 수도권, 비수도권, 지방간 상생관계의 정립

2.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

전국을 기초생활권, 광역경제권, 초광역개발권으로 구분하여 다원적 개발

● 기초생활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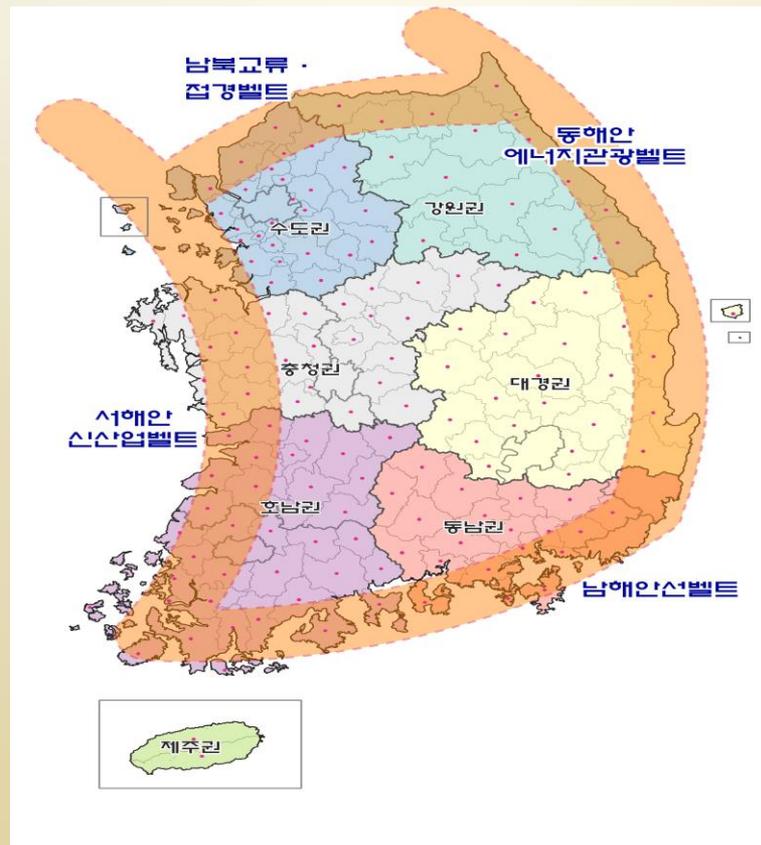
- 162개 시군을 도농통합적 기초생활권으로 개발

● 광역경제권

- 16개 시도를 5+2광역경제권 형성

● 초광역개발권

- 열린국토공간을 위한 초광역권개발
- 다양한 초광역연계사업 발굴 추진



2.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

광역경제권 구상

- 5+2로 권역설정 :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미흡한 효과에 대한 대안
 - 5대 광역경제권 : 수도권, 충청권, 호남권, 대경권, 동남권
 - 2대 특별광역경제권 : 제주권, 강원권
- 선도프로젝트는 산업, 인력, 인프라, 성장거점 등 패키지로 추진
 - 산업 : 광역경제권별 선도전략산업(1-2개)선정, 글로벌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향
 - 인력 :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별 1-2개 거점대학 육성(총 20개정도)
 - 성장거점 : 과학비즈니스벨트, 국가산단, 경제자유구역, 새만금 등
 - 인프라 : 국책사업으로 SOC정비확충(30개/5년 50조원)
- ‘지역균형발전법’ 을 ‘지역발전법’ 으로 개정
 -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(5년 단위 실행계획)-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계획 수립
 - 추진기구 : 권역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상시지원단 설치
 -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(지역계정 4조원 내외, 광역계정 5조원 내외)

3. 각부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규제 개선

● 국토해양부

- 2008년 12월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추진
 -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, 경제자유구역, 미군반환 공여구역 등에 산업단지 물량규제 배제 등
- 중장기적으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추진(2009-) : 대체입법 등 단계적 전환추진
- 도시외곽 농지, 산지, 환경, 군사규제완화 통해 개발가능지 확대
-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규제 완화

● 기획재정부

-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규제개선 추진
- 수도권정비계획법(수도권권역, 과밀부담금, 공장 및 학교총량규제, 광역시설설치부담등) 개정
- 산업집적활성화법(공장입지 규제) 개정 추진
-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(09-)
-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 완화, 농지소유규제완화

● 환경부

- 상수원 상류공장 입지규제 완화
-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화

4.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시각

-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강조
 - ▣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관계에서 탈피
 - ▣ win-win할 수 있는 역할수행으로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에 초점
-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에 우선순위
 - ▣ 지방보다 수도권내 낙후지역 규제완화에 관심
 - ▣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
 - ▣ 상대적으로 지방을 소외하는 듯한 정책추진 계획 견지
- 지방을 배제한 수도권중심 규제완화 정책도입
 - ▣ 정비발전지구 제도
 - ▣ 기업 및 낙후지역 관련규제 개선
 - ▣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수립
 - ▣ 수도권 및 그린벨트내 공장건립 규제완화 등

Ⅲ

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쟁점

1.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계 전환

● 수도권 계획적 관리기반 구축

- 수도권발전종합대책(2005), 제3차수도권정비계획(2006)에서 계획적 관리체계 전환 명문화
 - 개념 : 합리적 사전계획 수립, 개발위치와 면적, 속도와 형태를 규제 혹은 유도하는 공공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행위
 - 계획전관리체계 전환 중장기 제도정비 방안 연구수행중(2007-2008.4)

● 수도권 정책의 딜레마 해결, 지속가능성 추구

- 통합적 대도시 관리, 신국토정책들과 단계적 추진

● 계획적 관리 : 신개발주의(규제완화)

- 수도권재집중, 수도권정책의 무력화

● 토지이용제도 근본적 전환필요

- Zoning을 계획허가제도로 전환(구체적인 계획을 근거로 개발행위를 사안별로 허가)
- 성장관리(규제, 저지)는 규모, 시기, 입지선정

1.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계 전환

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계획적 관리법(안)의 비교

| 구 분 | 수도권정비계획법 | 수도권의계획적관리법(안) |
|--------|--|---|
| 권역구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3개권역(과밀억제, 성장관리, 자연보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과밀억제, 성장관리로 이원화 •개발을 위한 특례지구 지정 |
| 공 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대기업 : 신설금지, •중소기업 : 제한적 허용 •공장총량제로 규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업규모별 제한 폐지 •공장총량제 폐지 |
| 대 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설금지 •증원은 총량으로 규제 •이전은 심의 후 허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4년제 대학 신설 허용 |
| 연수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증축 금지, 일부 권역은 심의 후 허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, 신증축 허용 |
| 공업용지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본 면적 증가 금지 •신규 지정 불가 •소규모 단지만 허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지역전략산업지 선정 및 육성 •첨단업종 도시형 공장 신증설, •대규모개발사업 협약제 |
| 택지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자연보전권역 : 6만㎡ 이상 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대규모 택지조성가능 •과다개발 방지 위해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후 허용 |
| 관광지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자연보전권역 : 6만㎡ 이상 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가능 •일정규모 이상은 심의 후 허용 |

2.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

- 정비발전지구(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2개 제안 : 국토해양위원회(9월현재))
 - 수도권 경쟁력 강화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
 - 수도권 관련규제의 예외적 완화지역, 일정의 규제특례지구
 - 수도권시도와 중앙정부간 협상의 산물, 수도권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적수단
- 지정대상
 - 공공청사·공공기관·시설이전부지와 연접한 주변지역, 산업구조고도화 필요지역,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5호의 낙후지역,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접경지역, 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시행지역,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지원특별법 제2조3호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
- 주요쟁점
 -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,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
 - 공장총량규제,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,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,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, 공장의 신설·증설, 이전, 업종변경·제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함
 -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101개가 과밀 및 성장관리지역에 입지
 -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은 수도권전체면적의 92%에 해당

3.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의 개발

●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(2006)

- 주한미군공여 및 공여반환지역의 낙후된 경제진흥, 균형발전, 주민복리증진사항 규정
- 전국 482만명 중 경기북부 140만명 거주, 경기도면적의 51% 15억 7,200만평
- 건축면적 500km² 이상 공장 신증설 허용, 공장총량제 별도 배정(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없음)
- 첨단 61개업종 허용, 외국인 투자요건 완화,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, 고용안정사업 우선실시,
- 4년제 대학이전증설, 외국교육기관설립, 사회간접자본시설 우선설치,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, 인허가등 해제 등
- 개정안 : 개발제한구역 해제,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배정, 4년제 대학신설

●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과한 특별법(2004)

- 미군기지이전 사업 및 평택시등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발전 촉진
- 각종 인허가의 의제, 개발부담금·농지보전부담금·대체초지조성비·대체산림자원비 감면가능
- 건축면적 500km² 이상 공장 신증설 허용, 공장총량제 별도배정(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없음)
- 외국교육기관의 설립, 국고보조금 인상지원,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 등
- 개정안 :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 소득창출 사업 지원

4.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

● 공장총량제

-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의해 1994년부터 도입시행
-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: 산집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장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
- 수도권내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, 수도권 난개발과 산업집중 간접관리 제도
-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폐지요구
- 공장배정물량 및 충족률
 - 배정된 물량중 2003년 99.7%, 2006년 76%만 소화

● 적용방법

- 2006년부터 3년 단위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
-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공장 총량 배정
- 공장총량 집행잔량은 공장총량 설정기간중에 한해 다음년도로 이월
- 평택시의 경우 별도 배정(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)
-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별도배정

5. 수도권 신도시, 택지개발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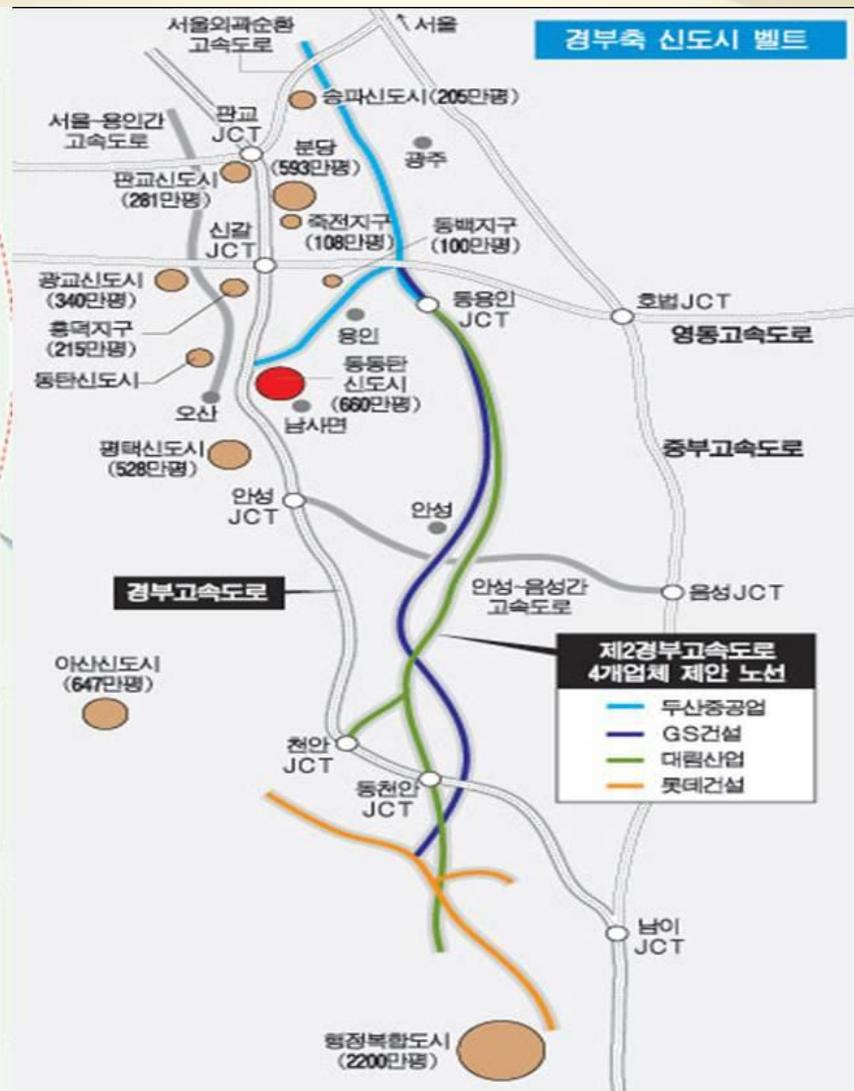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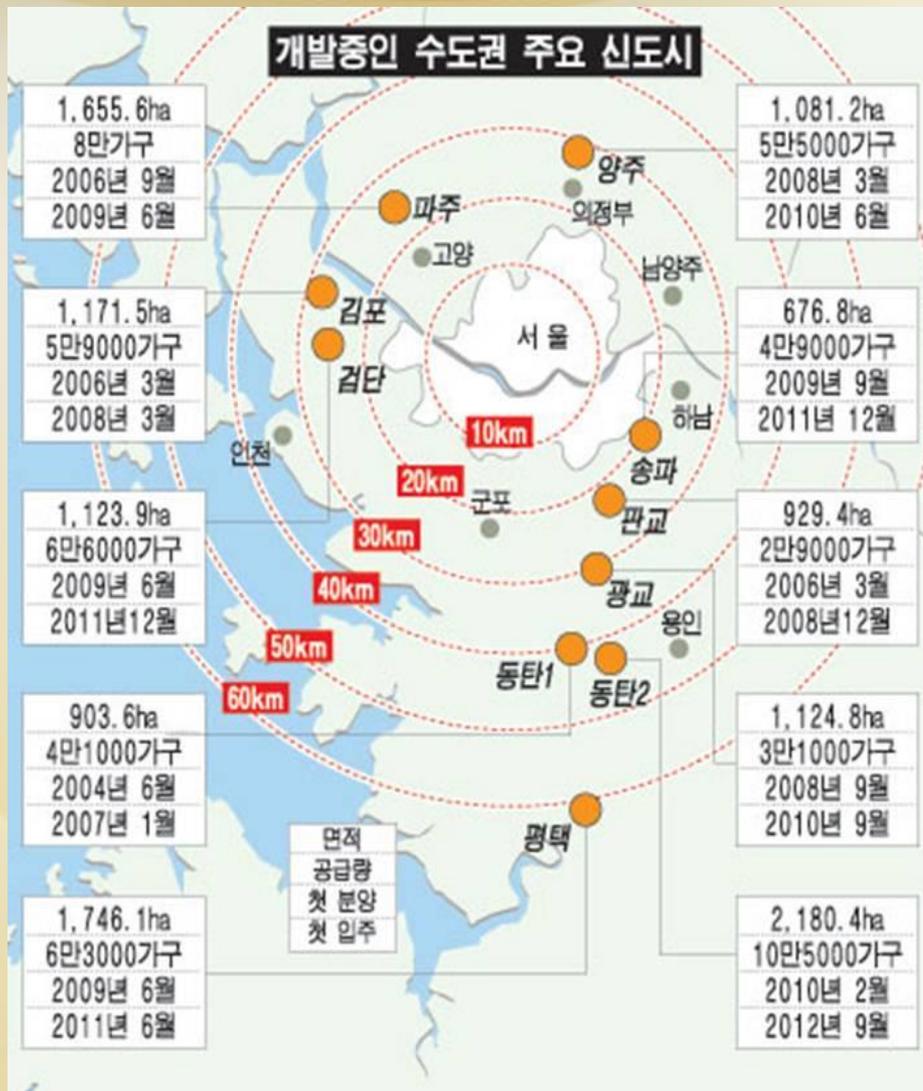
● 수도권신도시, 택지개발 조성

- 수도권 신도시 17개, 신도시인구 310만명
- 수도권 2기 신도시 : 10개 지역 주택 58만호, 인구 150만호 규모로 추진
- 경기도에 3-4개 명품신도시와 10개 지구 뉴타운 사업 추진
- 18개 수도권 전철망 계획
 - 철도 1시간 이내 접근가능한 24개 도시, 30분 이내 15개 도시
- 국가 SOC투자 : 수도권에 67% 집중
- 수도권인구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택지개발 등 신도시 사업임

● 경기도 택지개발(1980-2007)

- 총181건에 262km² 개발(중), 완공 110건 108km², 301만명 입주
- 완공 : 110건-310만명 입주
-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할당인구는 1,450만명이지만, 시군도시기본계획인구는 1,800만명으로 계획 350만명의 차이 발생

5. 수도권 신도시, 택지개발 조성



6. 개발제한구역 해제, 광역경제권에 따른 수도권규제완화

● 개발제한구역 해제

-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(2007)에서 개발제한구역중 집단취락과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등을 해제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
 - 서울 13.3km², 인천 8.3km², 경기도 104.2km², 총 125.8km²를 2020년까지 단계별 해제
- 이명박 정부에서도 향후 10년간(2009-2018년) 연평균 수도권 30만호 건설(총300만호)
 - 그린벨트조정가능지, 산지, 구릉지 연4만호, 2기 신도시 등 도시외곽 택지개발 연8만호 건설
 - 40만호 건설 100km²규모의 택지필요

●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따른 수도권규제완화

- 5+2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을 다른 광역경제권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고 지원 및 규제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
-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율성 및 분권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어 “수도권”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폐지 및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불가피할 것임
 - 과밀부담금 폐지, 정비발전지구 제도 확대, 정비발전지구내 대학신설 및 이전요구, 첨단업종 신증설, 산업입지제도개편 요구 등

IV

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발전전략

1.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

- 5+2광역경제권은 과거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 잘된 사업을 적극계승하고,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나갈 것임을 밝힘
- 현재 분위기는 전임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면부정 우려
- 지역균형발전이 국토공간정책으로 유용한 이유
 - 수도권과 비수도권, 농촌과 도시, 비수도권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유용한 틀 제공
-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정책과정의 방법론으로든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정책의 목적으로든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

♣ 영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원칙

-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정책의 개발과 일관성 유지
-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구축
- 정부와 주민을 연계하고 실제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

2. 분권 및 개방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운용

-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 노정
 - 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
 -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의 근거로 활용우려
- 실험 없는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정책실패 가능성 상존
 - 프랑스의 광역권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, 검토, 실험을 거쳐 점진적 발전모색
 - 일본의 도주제 역시 정책실험을 병행하면서 장기적(2018년)으로 추진
- 중앙정부주도의 광역경제권 추진
 - 프랑스 광역권제도는 중앙정부의 조정 및 촉진기능 유지,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분권적 방식 병행
 -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감대 형성과정 없이 중앙정부주도의 정책추진
- 행정구역중심의 경직된 광역경제권
 - 독일의 경우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생활권중심으로 개방적으로 설정
 - 행정구역 중심의 경직된 광역경제권 운영은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이해관계 배치시 이의 해결에 상당한 난관에 봉착

3. 선지방육성, 후수도권규제합리화 원칙견지

●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 합리화

- 공공기관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
- 2008년 이후 수도권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
- 금지위주 규제는 심사를 통해 허용하는 간접규제로 변경
- 수도권정비계획을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계획관리체계로 전환
- 중앙정부는 조정, 중재 및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드맵 제시

● 새정부에서 계획중인 수도권규제 합리화

-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
- 정비발전지구제 도입, 수도권계획적 관리체계 전환
-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등
- 수도권규제완화를 대안 없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수도권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,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주민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선지방 육성, 후수도권규제합리화 원칙 견지 필요

4.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

- **공장총량제를 산업단지까지 포함**

-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를 산업단지까지 포함
- 평택지원특별법과 미군공여구역특별법에서 정하는 공장총량 예외배정 총량도 공장총량제에 합산

- **공장총량제 설정주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환원필요**

- 공장건축총량 배정받아 공장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 배정물량 재사용가능
- 당해연도 미집행되면 자연소멸 시키던 것을 다음연도에 이월사용가능

- **공장총량 범위내에서만 공장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**

- 2003년 이전 공장건축허가 받고 공장총량 부족으로 장기간 대기하고 있던 602건 114만 제곱미터를 허가 처리

5. 지방재정분권강화

● 지방재정분권 강화

- 지역경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검토

● 지방발전기금 운용

-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를 지방발전기금으로 운용
- 비수도권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기금이나 펀드 조성 검토

● 일정기간동안 비수도권에 투자우선

- 제한된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비수도권에 우선투자 유도

6.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균형발전 시책 확대

● 지역에서의 불균형 폐해

-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 및 낙후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
-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

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시책

-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정책논리에 정당성 부여
- 충남 :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, 8개 시군에 5년간 4,782억원 지원
- 충북 :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, 6개 시군에 5년간 1,006억원 지원, 지역균형발전센터 설치(충북개발연구원내)

●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보완점

-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목표 명확화
-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사업의 발굴
- 시설중심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방안 모색
- 균형발전제도 및 전담조직체계 구축 등

7. 국회균형발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역할강화

● 국회 “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별위원회” 구성(2008.8.26)

- 2009년 8월 25일까지 활동(18인으로 구성)

-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에 대한 부작용 해소,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

● 주요역할

-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정책

: 선지방발전, 후수도권규제완화 등

-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 추진

: 사업비 감액, 정부부처이전 고시 등

-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총청권 건설

: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으로 공약, 총청권입지 당위성 강조

8. 10.30 조치에 대한 비수도권 대응방안 모색

● 충청권차원의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마련

- 대전, 충북, 충남이 '충청권경제협의체' 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공동 대응 방안 모색
- 충청권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개정 저지를 위한 노력

● 지역균형발전협의체차원의 수도권규제완화 대책마련

-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10.30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비수도권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대응 방안 모색
- 비수도권 시민단체, 전문가 등이 연대하여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실천행동 추진



감사합니다